

# 중소(中小) 사료공장들이 만든 협동조합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에서  
재벌기업이 유리한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 되어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중소기업법이 제정되어  
중소기업도 보호를 받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경제체제로서 자본주의적 시장경제를 채택하고 있다. 기본적인 경제문제의 해결을 시장기구에 맡기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체제에서 생산과 판매에 많은 자본을 투입할 수 있는 재벌기업이 유리할 수 밖에 없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우리 축산관련분야도 양돈 동물약품 배합사료업계가 재벌기업의 참여로 계층간의 문제가 표면화되기 시작하여 천민자본주의 형태로 가고있지 않느냐 하는 걱정을 하게 되었다.

서구 선진국들이 자원배분 소득분배 빈익빈 부익부 독과점 등 시장 실패를 스스로 조정해 나옴으로써 자본주의체제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조정작업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하기에 농·수·축협의 민주화가 요청되고 6공화국 헌법 제123조 2·3·5항에 중소기업의 보호육성을 명시하였고 중소기업기본법이 제정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서 한국배합사료공업협동조합의 탄생은 필연적이며 앞으로의 역할도 크리라고 생각되어 김용태이사장을 만나보았다.



▲ 김용태 이사장과 협동조합에 대한 대담을 나누고 있다.

기자→ 바쁘신중에 시간을 내어 주시어 감사합니다. 정부의 인가가 나오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의 경과를 설명해 주시면 우리나라 사료산업의 역사가 되어 큰 뜻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김용태이사장→ 우선 협동조합 설립인가가 있기까지 협조하여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억하시겠지만 1977년 7월 감사원에서 전국 배합사료공장에 대한 일체 감사를 실시한적이 있었읍니다. 이 감사결과로 농수산부가 소위 사료공장시설근대화 정책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이에따라 78년부터 재벌기업들이 사료산업에 참여하게 되었고 축협도 4개의 대단위공장을 설립하게 되었읍니다.

이렇게 생산규모는 크게 증설되었는데 10.26후 극심한 축산업계의 불황으로 사료업계에 외상기간이

길어지고 가격dump이 자행되어 중소사료업체에 자금난이 심각해 부도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36개 중소업체가 중소사료업체 도산방지를 위한 시책건의를 준비하였는데 이때 사료산업을 중소기업고유업종으로 지정해 줄 것을 기본내용으로 하였읍니다.

이러한 움직임이 더욱 구체화되어 83년 7월 사료협회 6차 이사회와 8월3일 8차 이사회 3차 임시총회를 거쳐 정부에 중소기업 고유업종 지정건의를 하게 되었는데, 그 내용에도 대기업의 신규참여 억제와 시설과잉을 막아 출혈경쟁을 억제하고 장기 외상판매는 결과적으로 과잉생산을 유발해 축산업계의 도산으로 이어져 이를 막기위해 사료산업의 재벌기업위주의 재편을 막자는 것이었읍니다.

기자→ 81년부터 협동조합의 태동이 있었으니 7년만의 출산이군요, 농림수산부의 회신은 받았읍니까?

김이사장→ 늘어나는 배합사료의 안정적 공급과 1개 사료공장(300MT/1일) 시설에 약 50억원이나 소요되고 당시 외형 1조를 돌파해서 1개 공장당 15억정도의 외형으로는 중소기업으로 인정이 어려우니 스스로 알아서 경영합리화를 해나가라는 것이었읍니다.

기자→ 그후 스스로 잘되어 나갔습니까?

김이사장→ 장기 외상판매가 계속되고 미수금 회수부진으로 자금 압박이 심각해져 중소업체 7~8개 가 휴업 또는 도산하게 되어 85년 12월 중소사료업체의 도산방지를 위한 긴급 전의문을 준비하고 이 때에 비로소 새로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는데 당시 참여 업체가 중앙, 홍성, 한일, 부국, 현대, 신촌, 서울, 진양, 경축, 진흥, 동서, 한성 등 15개사 이었읍니다.

추진위원장에 한성사료 김재수사장이 추진위원으로 부국 신촌 현대 진양사료를 선출했읍니다.

기자→ 이 조직이 모체가 되어 협동조합이 탄생하게 되었군요.

김용태→ 86년 7월 18일 드디어 한국배합사료공업협동조합 발기인 대회가 개최되고 8월8일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이사장을 제가 맡게 되었읍니다. 8월22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설립인가 추천을 받아 8월27일 농림수산부에 설립 승인신청을 하였읍니다.

**문제는 정부가  
협동조합과  
협회를 구분하지  
못하고 유사단체로  
보아온데 있었다.**

이에 대한 회신이 11월6일 농림수산부로부터 배합사료제조업은 사료관리법에 의거 특정업체에 허가한 산업으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고 80년 3월 이후 신규허가를 하지 않고 사료곡물 수입한도량 관리 운영으로 중소업체를 보호하고 있으며, 정부의 유사단체 통폐합원칙(동일목적 동일기능의 단체를 둘 수 없다)에 의해 협동조합 인가가 불가하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기자→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중소기업으로 인정해서 협동조합 설립인가를 추천했는데도 농림수산부가 중소기업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군요. 이러한 판결을 내린 용기도 놀랍지만 협동조합과 협회를 구분하지 못하고 유사단체로 본데 비극이 있군요. 같은 농림수산부가 허가해서 양계협회와 양계협동조합, 서울우유협동합과 낙농육우협회 등 서로 기능을 분담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였거나 말못할 사정이 있었던 모양이지요?

김이사장→ 바로 관계요로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국회의장 농림수산부장관 경제기획원장관 상공부장관 감사원장) 상공부로부터는 바로 중소기업 협동조합설립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11월20일 국회 농수산분과 위원 전원에게 진정서를 내고 12월 16일에는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시기적으로 국회가 휴회기간이기 때문에 여론에 호소하기 위해 87년

4월4일 매일경제신문1면에 5단통으로 중소기업의 보호육성이 농·축산인을 위한 길이다라는 광고를 내었습니다.

농림수산부도 87년4월20일 중소배합사료공장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신규참여를 불허하고 1개회사 1개공장 원칙을 유지하며 1일100MT규모로 시설규모를 제한하고 사료곡물의 한도량 월별 관리를 철저히 하여 대기업의 시장점유율을 제한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대안의 제시로 국회에 제출한 청원서를 철회하였습니다.

기자→ 정부가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정부의 대책이란 것이 실현 불가능한 것들인데도 청원서를 철회한 것은 역시 관에 업계가 약할 수 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김이사장→ 2개월후 6.29선언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7.27일 매일경제신문에 배합사료업계의 어려움이 기사로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중소업체의 어려움을 증명하는 것이 대양이 대한제당에, 삼진이 제일제당에, 무안서강이 삼양사로, 영홍이 카길로, 삼화양유가 미원으로, 금성물산이 퓨리나로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8월8일에는 임시국회 본

회의에 재벌기업 신규참여 제한의 허구성과 월별 한도량 관리의 허구성 농림수산부의 재벌기업비호와 중소기업의 자구책 일환으로 협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 등을 질의하고 민정당에도 협동조합설립인가에 협조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기자→ 6.29선언은 이러한데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군요.

김이사장→ 9월28일 22개사가 모여 다시 창립총회를 하고 10월에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추천을 다시받아 11월에 농림수산부에 다시 인가신청을 하였습니다.

기자→ 모든 일을 다시 한번씩 반복해야 하니 참으로 힘드는 군요.

김이사장→ 11월 인가신청후 금년 2월 15일에는 농림수산부장관에 보내는 공개서한을 축산신보 광고로 게재하는 등 재인가 신청에서도 오랜시간이 걸려 축산업계에 호소도 하였습니다. 드디어 3월2일 인가가 나와 3월14일 법인등기를 마쳤습니다.

기자→ 한편의 소설을 읽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군요. 정부와 산업간에 시각의 차이가 이렇게 커서는 앞으로 민주화시대를 맞아 어디서부터 대화를 풀어야 할지 걱정입니다. 86년 7월18일 조합발기인총회에서 이사장을 맡으신후 약 20개월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재 조합원은 몇개사이고 시장점유율은 어

느정도입니까?

김이사장→ 중소기업 규모의 회사가 28개사인데 22개사가 가입되었고 2개사가 가입신청서를 내어 소생원 이시돌 전국 등 특성있는 몇개 회사를 제외하고 전부 가입하였습니다.

시장점유율은 79년 대기업이 52%에서 금년에는 77%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기자→ 조합설립취지가 대기업에 의한 과당경쟁 상태에서 그대로 있게 된다면 앞으로 수년간 이러한 혼란상태가 계속되다가 어차피 중소기업은 모두 도산하고 말 것이며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여야 하며 현정부의 최대정책 목표가 정의 사회 구현에 두고 있으며, 중소기업 활성화와 보호육성을 중요 정책으로 삼고 있다.

우리 중소기업기업자들은 나쁜 자만은 살아 남을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버리고 협동조합을 결성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보호를 받고 중소기업자끼리 상부상조의 정신에 의거한 협동사업을 행하고 상호이해의 정신으로 대기업을 경제 한다면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사료업계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취지와 한국축산 발전에 기여한다는 정신 아래 협동조합을 결성하여 한국 배합사료 협회를 중심으로 대기업자와 중소기업자가 균형있는 업계를 형성해 나가기 위해 정부와 축산업계 그리고 대기업자의 협조와 이해를 얻어 한국 배

공존과 협동을 통해  
국민식량경제와  
직결된다는 책임의식으로  
국가사회에 봉사한다는  
자세로 출발하였다.

합사료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한다로 되어 있으며 빌기인대 회때의 정신도 단순한 경제적 지위의 향상과 이익만을 추구기 위한 일시적인 방안이 아니며 대기업 공장의 구조적인 횡포에 대응기 위한 막연한 배타정신만도 아닌 동업인으로서의 공존과 협동을 통해 배합사료산업이 국민식량경제와 직결된다는 책임의식으로, 산업의 균형있는 발전을 통한 국가사회에 봉사한다는 겸허한 자세로 출발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신은 아직도 유효한 것이고 앞으로도 지켜져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조합의 역할 등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이사장→ 우선 조합원들의(중소기업) 사업영역확보에 노력하고 이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부의 시책이나 큰 흐름이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협동조합의 발전은 역사의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조합원의 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한 공동구판사업(단체 수의계약 포함) 확대는 정부에서도 예산회계법 정부투자관리기본법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등으로 보호육성하고 있어 적극 확대해나갈 것입니다.

과당 출혈경쟁 문제도 중소기업

사업조정법 공정거래법 등이 있지 만 법이전에 건전한 거래풍토조성으로 중소기업의 권익보호를 위한 대화의 노력을 계속하고, 정부의 금융지원제도의 활용 등 할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가세·관세 면제 등 협동조합의 세제혜택추진과 중소기업 경영 및 기술지도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품질향상으로 경쟁력을 높이는 일에 공동노력을 경주할 생각입니다.

기자→ 사업계획서에 구체적인 많은 계획들이 있군요. 지면 관계상 다음 기회에 소개하기로 하고 끝으로 양계농가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이사장→ 그간 협동조합설립까지 여러 형태로 협조하여 주신데 감사를 드리며 조합은 설립취지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나라 축산업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양축가와 함께 발전하는 길을 모색할 것이며 배합사료산업이 독과점형태로의 재편을 막아 양축가에 더욱 값싸고 품질좋은 배합사료의 생산공급과 질높은 아프터서비스를 위해 조합은 탄생한 것입니다. 앞으로 더욱 많은 양축가와의 대화를 통해 이를 이룩해 나갈 것입니다.

기자→ 오랜시간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배합사료공업 발전에 새로운 전기가 되어 양축가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053]**